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1,5)

회 의 록

주무관				

회 의 명	제9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회 의 개 최 기 관	토지정보과
회 의 개 최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14:00 ~ 15:00
회 의 장 소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
참 석 자 명 단	위원장(부군수), 박용근 위원(자주재정과장), 박봉수 위원(휴먼도시과장), 박미영 위원(토지정보과장), 박기덕 위원, 조한희 위원, 박지수 위원, 강나영 위원, 이순희 위원, 류수 위원, 김진호 위원, 공영주(간사), 허윤정(서기), 성유정 주무관, 이민희 주무관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위원장 인사말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1.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 1,290건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안) : 10건

발언내용

○ 간 사 : 반갑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지가조사팀장 공영주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의 회의내용은 『부산광역시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기장군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의 내용이 기록되며 발언 시 발언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 심의건수 10건 중 건의 경우 심의 전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에 따라 심의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 인사말씀 후,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1,290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안)

10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결정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 13분 중 11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개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 원 장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정평가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2019.01.01.∽06.30.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및 신규 등록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안)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가 산정(안)건 등에 대한 심의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민원이 최소화되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공정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 !) 의안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　　사 : 금회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2019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2019-1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 원 장 : 먼저, 의안번호 2019-12호, 의안번호 2019-12호, ‘2019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 지가조사팀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제안 설명**

○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대상은 총 1,290필지이며,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 필지는 1필지입니다. 그러나 전필지에 대한 개별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각 읍면별로 종전지가 대비 지가변동률이 큰 필지 및 하락필지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만일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 심의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점심의조서 1페이지 기장읍 6필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장읍 담당 평가사께서는 검증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장근 평가사 : 먼저 신천리 98번지는 단독 및 2종근생 신축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대변리 203-23는 인근의 국유지 주차장용지와 비교하여 상이한 표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변리 485-5번지는 대변리485-4번지 2종근생시설과 일단지이기에 표준지를 수정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화리 318번지입니다. 해당필지는 인근의 농경지와 비교하여 상이한 표준지를 변경하고, 도로 접면을 광대한면으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다음 시랑리 160-12번지는 2종근생이 신축된 경우이며 내리 701-23번지는 단독주택 신축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평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의견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2페이지 장안읍 5필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장안읍 담당평가사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관읍 담당 평가사님이 검증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훈 평가사 : 먼저 좌천리 45-12번지입니다.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가 불하 받아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여 지가 상승된 경우입니다. 다음 장안리 443-6번지는 장안교 북동측 인근의 과수원입니다. 해당 필지는 분할 및 합병으로 용도지역이 1종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혼용되어 지가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다음 반룡리 산141번지입니다. 본 건 토지는 구기마을 북동측에 위치한 토지로 도시계획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인근 필지들과 비교하여 이용 상황을 전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하여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오리 411-3번지는 판곡마을회관 남동측에 위치한 필지로 일부 토지가 분할된 후 답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용도를 답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다음 길천리 439-25번지는 길천성당 북서측에 위치하며 2종근생 수리점이 신축되어 용도를 답에서 주거기타로 변경하여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그런데 장안리 443-6번지의 지가하락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용훈 평가사 : 최초의 443-6번지는 1종주거지역의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분할 및 합병되면서 넓은 면적의 자연녹지지역이 추가되어 지가가 하락된 경우입니다.

○ 위 원 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의견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페이지 정관읍 7필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정관읍 담당평가사께서는 검증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립니다.

○ 이용훈 평가사 : 먼저 매학리 136-26번지입니다. 정관측 곰내터널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 택지개발이 완료된 필지로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용도를 주상용에서 도로 등으로 변경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곡리 434-1번지입니다. 임곡마을회관 남측 인근 웅상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기존 1종주거지역과 자연녹지의 토지가 도로계획선에 의해 분할된 것으로 용도지역이 1종주거의 단일 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수리 728번지입니다. 협성르네상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1,2종근생 신축으로 인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용도 또한 전에서 주상기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림리 352번지입니다. 지난 회의 개발부담금 대상 필지로 예림리에서 내덕마을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 제조업소가 신축된 토지입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용도를 전기타에서 공업용, 접면 또한 맹지에서 소로한면으로 변경하여 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예림리 203-43번지입니다. 부산환경공단 남측에 위치한 필지로 203-9번지의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다음 예림리 622-3번지는 예림

리 에코펠리시아 동측에 위치하여 분할 및 2종근생이 신축된 필지로 용도를 답에서 주상기타로 변경하여 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림리 625-2번지입니다. 에코펠리시아 동측에 위치한 필지로 후면지의 토지가 앞 토지와 합병되어 도로접면을 맹지에서 소로한면으로 변경하여 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평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의견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4페이지 일광면 9필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 담당평가사께서는 검증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 평가사 :먼저 동백리 227-1번지입니다. 전면 후면지로 나눠진 필지가 합병이 되어 전면 해안도로변에 접하여 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문중리 180-28번지입니다. 원당마을 남측 전원주택 개발로 인해 이용 상황을 전에서 단독으로 변경하여 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다음 칠암리 182번지는 분할되어 도로접면을 세로가에서 세로불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의 저촉률이 반영되어 지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청광리 169-3번지입니다. 청광마을 입구에 위치한 필지로 종전 도로로 잘못 조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 문제와 공부 정리가 되었고 현황이 전으로 확인되어 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청광리 174번지는 공장 신축허가로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횡계리 산35-1번지는 일부 1종주거지역, 일부 자연녹지의 임야입니다. 종전은 면적이 넓어 지가를 낮게 산정하였지만, 등록사항정정이 되고 고가에 매입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가 상승하였으며 토지의 일부분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용천리 775-3번지입니다. 용천저수지 우측에 위치한 동부산승마장으로, 축사로 승인이 나 자연림에서 전기타로 변경하여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용천리 산35, 산35-1번지는 지분별로 분할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전은 면적이 넓어 특성을 급경사로 조사하였지만 분할됨으로 인해 적정면적이 되었으며 또한 하단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완경사로 수정, 진입이 가능하여 세로불에서 세로가로 접면을 변경하여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평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의견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5페이지 철마면 7필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철마면 담당평가사께서는 검증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훈 평가사 : 먼저 장전리 산78-3, 산78-5번지입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에 위치한 필지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은 야적장입니다. 인근과 균형을 위해 용도를 임야에서 전기타

로 수정하여 지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산78-5번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당 176,500원입니다. 다음 웅천리 565-2, 565-6번지입니다. 두 필지는 웅천리 소재 석길마을 남쪽에 위치하며 도시계획 분할로 인해 1종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혼용이던 것이 웅천리 565-2번지는 전체 용도가 자연녹지, 웅천리 565-6번지는 전체 용도가 1종주거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된 경우입니다. 또한 웅천리 565-2번지는 바로 위 개발제한구역인 웅천리 563번지와 비교하여 지가가 낮아 가격 균형을 위해 본 건 토지의 표준지를 변경하여 지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천리 719-2, 719-7, 719-8번지로 석길마을회관 남측에 위치하며 도시계획선에 의해 분할된 것입니다. 웅천리 719-2, 719-7번지는 1종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에서 전체 용도가 1종주거지역만 남았으며 719-7번지의 가격이 상이한 것은 도로저촉이 100%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웅천리 719-8번지 또한 분할로 인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만 남아 지가가 하락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평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장전리 산78-3, 산78-5번지는 외곽순환도로에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가 75,000원입니다. 지목이 전답이면 괜찮지만 해당 필지의 지목은 임야로 자산 값어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위의 형평성을 따져 67,000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 이용훈 평가사 : 표준지 장전지496-2번지는 본 건 토지의 아래쪽 인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현황 평가입니다. 임야 또한 평지,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 격차가 나나 해당 토지처럼 인근 전답들과 비교하여 현황이 전답으로 사용된다면 전기타로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야적장으로 사용되므로 순수 임야보다는 실질적 가치는 더 높다고 보며, 최근 실거래 자체가 ㎡당 176,500원으로 공시지가 자체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비교표준지와 해당 필지의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야적장으로 쓰지 않으면 현황을 다시 변경하실 겁니까? 표준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 ***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개별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소음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위원 : 해당 필지는 고속도로에 위치하여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격 결정이 왜곡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 위원 : 산정을 할 때 실거래가 이 정도니까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 또한 순수 임야가 아니므로 전기타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의 임야는 야적장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순수 임야보다는 높은 건 맞지만 이정도로 높은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용훈 평가사 :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현황이 전답이나 야적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전답이나 전기타, 잡종지 등으로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산정된 표를 보시면 해당 필지는 고속도로의 거리 등 유해시설접근성이 반영이 되었고 지목감가도 된 것으로 산정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종전지가와의 격차가 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위원 : 위원님,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 *** 위원 : 개발제한 내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법정 제약이 많으나 전답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야적장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가격형성요인을 조정하여 50,000원대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합니다.

○ 위 원 장 : 장전리 산78-3, 산78-5번지 두 필지는 상승률이 너무 높다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 위원 : 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매매 사례도 감안은 해야 하지만, 지목에 따라 거래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임야와 전답을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가를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혹시 인근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표준지 적용할 게 있을까요?

○ 이용훈 평가사 : 특정 필지가 주변 필지들에 비해 금액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치에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있으나 특성이 비슷한 표준지를 가져와서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검토적용은 어렵고, 또한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은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적정한지, 토지특성이 올바른지를 보는 것입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은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것이고 평가사님은 정해진 규정대로 한 것이므로 적정하다는 말씀은 두 분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근 평가사 :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마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 내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이 전, 잡종지로 쓰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자연림이 아닌 필지는 토지임야로 산정되며 거래 또한 전답과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필지들은 한 곳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한 두 필지씩 흩어져 있어 그런 경우를 위해 표준지를 심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황이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으며 내년에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표준지를 신설할 생각이 있으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적정 금액을 정해주시면 올

해는 검증 지가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이러한 것이 조정될 수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 위 원 장 : 해당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를 50,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모든 위원들 :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6페이지의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장읍 담당 평가사께서 검증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장근 평가사 : 죽성리 410-9번지입니다. 해당필지는 죽성 바닷가의 신축된 카페입니다. 인근의 비슷한 토지특성을 가진 표준지로 변경하였으나 고저에 따른 지가차이로 적정해 보이므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평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적정한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고, 오늘, 심의한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의견 없습니다.

○ 위 원 장 :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장전리 산78-3, 산78-5 필지를 67,000원에서 50,000으로 하향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바 이의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장전리 산78-3, 산78-5번지의 가격은 67,000원에서 하향된 50,000원으로 조정된 가격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 !) 이상으로,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 이어서, 의안번호 2019-13호,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 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 지가조사팀장은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 간　　사 : **제안 설명**

○ 위 원 장 : 먼저, 첫 번째(안)과 두 번째(안)인 기장읍 죽성리 410-2번지 A부지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 및 기장읍 죽성리 410-2번지 B부지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연접사업지로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적정한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가 없으므로 기장읍 죽성리 410-2번지 A부지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 및 기장읍 죽성리 410-2번지 B부지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 !) 세 번째(안)인 정관읍 용수리 309번지 외 4필지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질문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의견 없으므로,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정관읍 용수리 309번지 외 4필지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네 번째(안)인 장안읍 월내리 257-37번지 외 3필지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적정한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장안읍 월내리 257-37번지 외 3필지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다섯 번째(안)인 장안읍 반룡리 25-8번지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대상지와 표준지의 지가가 15,600원과 250,000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15,600원은 임야 상태의 1월1일 기준지가이며 종료시점지가가 220,000입니다.

○ 위 원 장 :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장안읍 반룡리 25-8번지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여섯 번째(안)인 일광면 화전리 321-31번지 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적정한 것 같습니다.

○ 이용훈 평가사 :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일광면 화전리 321-31번지 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일곱 번째(안) 및 여덟 번째(안)인 일광면 문동리 7-6번지 외 4필지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과 일광면 문동리 7-18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연접사업지로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 질문 없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일광면 문동리 7-6번지 외 4필지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과 일광면 문동리 7-18번지 외2필지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아홉 번째(안) 및 열 번째(안)인 일광면 문중리 180-28번지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과 일광면 문중리 180-34번지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연접사업지로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들 : 적정한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감정평가사 검증 원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모든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 원 장 : 이의 없으므로, 일광면 문중리 180-28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 조성사업(안)과 일광면 문중리 180-34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위원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2019-12호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원안가결 1,289건 수정가결 1건
- 안건 2019-1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안) 원안가결 10건

연번	대 상 지		심의결과	산정지가(원)
1	기장읍 죽성리 410-2 A부지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죽성리 413》	1,179,000
2	기장읍 죽성리 410-2 B부지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죽성리 413》	1,179,000
3	정관읍 용수리 309 외 4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원 안 《용수리 338-1》	419,000
4	장안읍 월내리 257-37 외 3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조성사업	원 안 《월내리132-49》	961,800
5	장안읍 반룡리 25-8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반룡리 65-8》	220,000
6	일광면 화전리 321-31	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	원 안 《화전리 316》	501,600
7	일광면 문동리 7-6 외 4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문동리 63》	1,134,000
8	일광면 문동리 7-18 외 2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문동리 63》	1,134,000
9	일광면 문중리 180-28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신평리 291-4》	392,500
10	일광면 문중리 180-34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부지조성사업	원 안 《신평리 291-4》	392,500

비고	